

주요국의 해외인재 유입정책 동향

■ 손 가 녕*

1. 개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핵심근로인력(20~60세)이 감소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¹⁾가 있었으며, 2020년까지는 과학기술 핵심인재가 약 9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²⁾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 및 활용은 인력정책의 핵심으로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우수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다국적 우수인재들을 유입하여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글로벌 인재 전쟁으로 비유될 만큼,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세계 각 국들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우수 과학자를 지원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인재 유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유학생 유치제도 및 비자제도를 포함한 일반 해외인재 유입정책과 글로벌 스타트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원, (043)531-4142, rotersonne@kisdi.re.kr

1) 한국경제연구원(2012. 7. 18)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활용”, 《KERI Brief 12-03》
2) 삼성경제연구소(2012. 2. 22)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CEO Information 842호》

유치정책으로 대표되는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국의 일반 해외인재 유입정책

(1) 미국

미국 해외인재 유입정책의 가장 큰 틀은 다중 우선순위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해외인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순위를 정해 유연하게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취업이민 비자발급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국제적으로 증명된 과학자, 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1순위부터 5순위(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투자자)까지 차등을 주어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취업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출입국 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편익을 제공받으며 동반 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 유치제도를 살펴보면, 국토안보부는 이민·관세 집행국 산하에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를 설립하여 유학생 유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Fulbright 사업³⁾을 통해 연간 약 8천명을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유치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OPT(Occupational Trainee Visa) 프로그램⁴⁾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H-1B(고숙련노동자취업비자)나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해외인재 관련 비자제도로는 H-1B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직업(Special Occupation)

3) 미국의 정치가였던 제임스 풀브라이트(James Fulbright)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농산물을 외국에 공매한 돈을 그 국가와 미국의 교육교환계획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제안한 풀브라이트법(法)에 의거·확립한 풀브라이트장학금에서부터 시작된 사업. 1946년 설립된 풀브라이트재단은 세계 각국의 교수, 교사, 학생 및 기타 관계 인사를 미국에 유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한 전 세계 지식인들은 120개국 10만여 명에 달한다(www.fulbright.or.kr).

4) 조건부 직업연수비자(OTP)는 미국대학에서 정규과정(Full-time)을 수료한 외국학생에게 부여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학생비자(F1)에서 단기 취업허가를 받아 Full-Time 근무가 가능하며 최대 1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에 맞는 자질을 소지하고 고등교육을 수료(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험)를 필요로 하며 청원서를 소지해야 신청할 수 있다. H-1B는 매년 석·박사에게 2만 개, 학사 소지자에게 6만 5천개의 쿼터로 발급한다. 다만,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 H-1B도 있어 매년 발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처음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비자제도이다. 2015년의 경우, 이틀 만에 연간 쿼터인 8만 5천개에 도달해 조기 마감되었고,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2) 호주

호주는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점수제인 Point Based Skilled Migration(General Skill Stream)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직업과 언어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외에도 자격증, 근무경력, 연령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유학생 유치제도를 살펴보면, 교육부 산하 AEI(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에서 Endeavour Scholarship Program을 통해 연간 약 3천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학생에게는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Full-time) 근로를 허용하고 배우자도 동반비자로 거주를 가능하게 했으며 저렴한 유학생 의료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비자제도로는 단기취업비자(Subclass457)와 고용주후원비자(Subclass186)가 해외인재 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ubclass457은 호주의 부족직군에 속한 직종에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영어점수 IELTS 5.0 이상을 필요로 한다. 비자 발급자의 최소연봉은 직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49,999호주달러(약 4,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이다. 최근 호주 자국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호주 현지에서 인재를 발굴하

기 어려운 부문임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인력 고용의 대표적인 비자로는 고용주후원비자(Subclass 186)가 있다. 호주의 고용주가 해외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해외인재를 고용하는 경우 발행되는 비자로 고용인은 호주에서 단기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50세 미만의 외국인 중 해당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하며 고용주는 후원(sponsor)자격을 갖추고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최소 3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며 그 직종의 최소 급여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컨택 싱가포르(Contact Singapore)를 설립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취업, 투자 및 거주기회를 찾고 있는 글로벌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과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가 협력하여 설립한 싱가포르 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에서 커리어를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취업정보 및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희망자를 연령별, 경력별 주요 5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정보, 취업환경, 생활환경, 여가환경, 비자 등 싱가포르 거주 시 장점과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외 7개국에서 11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해외인재들에게 싱가포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대학생들에게 TEP(Training Employment Pass) 인턴비자를 발급하면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학생비자를 가진 자녀나 손자를 둔 유학생 가족들에게 Social Visit Pass를 발급하여 유학생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표 1> 싱가포르 근로자 비자 종류

(단위: SGD)

비자종류	내용	월 임금상한		특이사항
Employment Pass(EP)	전문직, 경영직 및 임원직	P1	8,000 이상	쿼터제 없음 고용부담금 없음
		P2	4,500 이상	
		Q1	3,000 이상	
S-Pass(SP)	숙련공	최저 2,200		쿼터제 있음
Working Permit (WP)	비숙련 노동자	주로 2,200 이하		고용부담금 있음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2014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근로자의 연봉으로 구분된다. EP(Employment Pass)는 싱가포르 근로자 중 가장 전문 인력이 취득하는 비자로 동반가족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취업비자로 알려져 있는 S-Pass는 주로 일반 기술자가 많이 취득한다. 동반가족의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월 4,000SGD(약 350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자로 학사 또는 석사 소지자이며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전문 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반가족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다. 2010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1년에 최소 15,000SGD(약 1,320만원)가 보장되어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주요국의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

(1) 칠레

칠레는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칠레를 중남미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칠레’는 해외인재를 유치하여 칠레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과 비자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매해 세 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각 라운드 당 100개의 팀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2천만 페소(3만 5천 달러),

체류기간 1년의 취업비자,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및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의 특징으로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지원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6개월간 칠레에 체류하며 현재 강연이나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며 창업연수 2년 이내의 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YouNoodle 플랫폼(www.younoodle.com)을 통해 신청서를 영어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가 완료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 현재 컨설팅, 수출입, 프랜차이즈 업종은 참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스타트업 칠레’는 광업에 높은 의존도로 인해 외부경제상황에 대해 취약했던 칠레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에 주목하면서 칠레 자국에 창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은 프로그램이다. 역량을 갖춘 해외인재들이 창업을 위해 칠레 사회 내에서 교류하며 창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페루 등의 중남미 국가들부터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칠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 활동이 지역경제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타트업 중 칠레에 정착해 사업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 스케일(Start-up Chile Scale) 프로그램⁵⁾을 운영하고 있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2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의 스타트업을 유치할 계획인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을 발표했다. 스마트 국가는 영어권이며 부패

5) Start-up Chile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 중 1년 동안 칠레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용의 70%, 최대 60만 페소(10만 달러)를 지원해주는 Scale-up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가 없고 안정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남아, 홍콩, 중국 등 인접시장의 크기 등 여러 싱가포르의 국가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의 스타트업을 싱가포르로 유인함으로써 싱가포르 전국을 완전히 연결하여 사람, 물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한 스마트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003년 10월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창업하는 외국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자(Entre Pass)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자는 싱가포르 회계 기업 관리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된 유한회사로 합법적 사업을 하며, 최소 50,000S GD(약 4,4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신청자는 최소 30%의 회사자본을 소유하며, 설립 이내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창업 비자를 발급받은 후 경과 년수에 따라 창업비자 갱신을 위해 고용 창출 및 총 사업비용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갱신해야하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Entre Pass 갱신 요건

경과 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싱가포르 내 고용 창출(명)	2	4	6	8	10
최소 총 사업비용(SGD)	100,0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2014

(3) 미국

미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도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타트업 비자’ 발급을 포함한 ‘스타트업 법안3.0(Startup Act 3.0)’을 실행하고 있다. 학생비자(F1)나 H-1B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졸업 후 혹은 H비자를 발급해준 회사를 퇴사한 후 창업할 경우, 매년 7만 5천 건의 비자를 발급하며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학생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이민비자(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며 비자를 받은 1년 안에 회사를 창업해, 10만 달러 이상 투자

를 받고, 2명 이상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면 비자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 3년 동안 유지하며 적어도 5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비자 제공 이외에도 업력 5년 미만이고 연 수입이 5백만 달러 미만 인 기업에게 일련의 세금 우대 조치(tax breaks) 제공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비자가 취소된다.

소액투자비자라고 하는 투자비자(E-2)는 투자이민(EB-5)에 비해 작은 규모의 투자로도 발급이 가능해 소액투자비자로도 불린다. 자격요건은 정확한 명시는 없으나 (Substantial Investment) 대략 20~30만 달러의 실질적 비즈니스 투자가 필요(부동산, 주식투자는 권장되지 않음)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과 미국투자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시점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투자자와 동반가족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이나 취득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반영구 비자라는 장점과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의 동반입국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들은 만 21세 이하까지 공교육 무료 혜택(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으로 인해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영국

2010년 11월 영국의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항해 런던 동부의 쇼디치(Shoreditch)를 Tech City로 지정해 기술혁신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선포했다.⁶⁾ Tech City 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 중 HQ-UK라는 기업유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ICT 비즈니스를 하는데 영국의 장

6) "Our ambition is to bring together the creativity and energy of Shoreditch and the incredible possibilities of the Olympic Park to help make East London one of the world's great technology centres." -David Cameron, 4th November 2010-

점을 부각시키고 사무 공간에서부터 세금 문제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형태로 상담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런던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일종의 창업비자인 Tech Nation Visa Scheme(Tier 1 Exceptional Talent)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신청의 자격요건으로는 ICT 기술기업의 업무경력이나 학업연구가 필요하다. 필수요건으로는 ICT 분야 기업의 임원이나 창업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첨단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증명 중 반드시 1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 해당 비자가 발급되면 우선 5년간 유효하며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해 무기한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⁷⁾

4. 결 어

주요국들은 이미 세계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혁신적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각 국들은 정부차원에서 해외 우수 창업자의 자국 생태계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⁸⁾을 운영하며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재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자의 자격 요건을 정량화하여 이를 공개해 해외인재의 비자 취득 가시성을 제고하는 포인트제도⁹⁾, 외국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기비자제도인 산학연계형제도¹⁰⁾, 창업비자제도¹¹⁾ 등이 있다.

-
-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1. 20) “ICT 기반의 융합형 혁신 클러스터인 Tech City UK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2016. 1. 20》.
- 8) 본문에서 언급된 스타트업 칠레,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영국의 테크 시티 외에도 프랑스의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등 세계 각 국에서 다양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9) 본문의 호주 Point Based Skilled Migration 외에도 일본의 고도 인재포인트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0) 본문에서 언급된 미국의 OTP비자, 싱가포르의 TEP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1) 회사를 창업하는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본급에서 언급된 싱가포르 Entre

국내에도 2015년부터 탄력적인 비자제도의 일환으로 기술창업비자(D-8-4)¹²⁾를 도입하였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특정 활동비자(E-7)¹³⁾ 및 우수 산업·과학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고용추천서제도(골드카드)¹⁴⁾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법률·세무 등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며 초기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해외인재 유입에 대한 의지와 육성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 운용방안의 체계화 및 시스템화는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14. 6. 27),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김진용 (2014),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정책 동향 및 방향 도출」, 《연구보고 2014-086》.

_____ (2015), 「국내 R&D 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 선진연구자 유치 및 활용 방안 연구」, 《정책연구-2014-006-학술기반지원》.

대외정책연구원 (2015. 9. 23), “칠레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Start-up Chile) 내용과 시사점”, 《KIEP 동향세미나》.

Pass, 미국의 E-2비자 외에도 캐나다의 Start-up Visa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2)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5년 5월 시행되었으며, 창업비자로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한다. 대상자는 학사학위 이상자이고 법인설립자(설립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이며 총 360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이어야 한다.
- 13) 공·사기관과의 계약 등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14) 해외우수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RT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통해 E-7발급을 지원하여 사증 및 체류상의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12. 2. 22),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CEO Information 842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1. 20), “ICT 기반의 융합형 혁신 클러스터인 Tech City UK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2016. 1. 20》.

조가원 (2014), “해외 고급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전략”, 《과학기술정책 제 23권 제 3호》.

한국경제연구원 (2012. 7. 18),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활용”, 《KERI Brief 12-03》.